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1-57-210호(사건번호 : 202106조사075)

안 건 명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1. 12. 22.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약정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설명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 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5,1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배경

1.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된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21.6.23~8.31)를 실시하였다.

나. 행위 사실

2. 국민신문고('19.7.1~'21.5.31) 등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심인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선택약정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설명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3. 단말기유통법 제7조제2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제5호는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5. 또한,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택약정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설명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와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6호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정명령)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 6.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나. 위법성 판단

- 6.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는 단말기 유통법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제2항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한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행위는 같은 법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 7.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2항,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약정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설명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8. 피심인은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동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선택약정 요금 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설명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2년 0월 0일

○○○(유동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4. 과태료 부과

9.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10.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라.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부터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비용을 오인하게 한 경우	법 제22조 제4항제4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차.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4항제6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나. 추가적 감경

11. 사실조사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위반행위 '라'에 대한 부과기준 금액 3,000,000만원의 30%인 900,000만원을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12.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위반행위 '라'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3,000,000원에 30%를 감경한 금액(+900,000원)을 합한 2,100,000원과 위반행위 '차'에 해당하는 과태료 3,000,000원의 합계인 5,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13.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4. 피침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피침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침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침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2월 22일

위 원 장

한 상 혁



부위원장

김 현



위 원

안 형 환



위 원

김 효재



위 원

김 창룡

